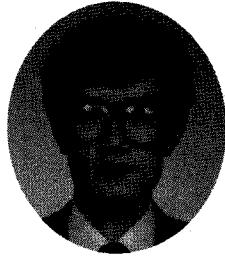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이 선 화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연구원, TTA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 의장



한 광 수

(주)현대전자 대리, TTA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 부의장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그 네번째로 일본의 표준화기구인 TTC(TTC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와 RCR(RCR :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I.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II. 국제 표준화기구(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III. 유럽 표준화기구(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

IV. 미국 표준화기구(ANSI, T1)의 지적재산권 정책

V. 일본 표준화기구(TTC,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

VI. TTA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안)

VII. 결론 및 국내 대응방향

V. 일본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일본에서는 유선분야, 무선분야, 방송분야에서 각각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전신전화기술위원회, 이하 ‘TTC’라 함), RCR(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전파시스템개발센터, 이하 ‘RCR’이라 함), BTA(Broadcasting Technology Association: 방송기술협회, 이하 ‘BTA’라 함)를 중심으로 표준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 단체들로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표준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무렵인 1985년에 설립되어 각각의 분야에서 TTC 표준, RCR 표준, BTA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8년 이후로 전기통신 표준화 분야에서 NTT, KDD가 소유한 특허 등이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TTC가 처음으로 1989년에 「공업 소유권 등의 취급에 있어 기본지침」을 발표하였으며, 1991년에는 또 하나의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uncil: 전기통신기술심의회, 이하 'TTCouncil'이라 한다)가 「평성2년도 전기통신기술심의회 답신」에서 지적재산권 정책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다.¹⁾ 또한, 1991년에는 RCR이 「표준규격에 관한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지적재산권 정책을 발표하였다.

TTCouncil이 「평성2년도 전기통신기술심의회 답신」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원칙은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각종 사항을 우정대신에 건의하는 TTCouncil의 성격상 주목할 만하다. 이 답신의 지적재산권 취급에 관한 사항에는 TTC나 다른 표준화기구에서 논의된 공통사항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준이 사회전체의 이익증대와 통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되고 있으므로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료로 제공되는 등의 차별적 취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답신에서는 각 분야에서 TTC, RCR, BTA의 세 기관이 각자 별도로 지적재산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TC, RCR, BTA는 모두가 우정성의 소관기관으로서 각 분야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허 등의 권리를 다루는 취급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일본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표준의 공적활용과 특허의 사적소유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타기구와는 달리 가급적이면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만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국제기구 혹은 유럽, 미국 등의 타표준화기구들이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영어로 'IPR : Industrial Property Rights'을, 한자로 '工業所有權'을 사용한다. 그러나, 취급범위는 대개의 표준화기구들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호에서는 TTC와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다룬다. TTC와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해를 돋기 위하여 각 기구의 주요임무, 조직구성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기구별 지적재산권 정책의 수립 배경 및 특징을 분석한 뒤에는 각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원문을 수록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1.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에 대하여

TTC는 전기통신망간, 단말기 및 전기통신망간 등의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 및 표준을 작성함으로써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표준화에 공헌함과 동시에 그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

1) 여기에서 또 하나의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uncil: 전기통신기술심의회)는 1985년 우정성조직령과 전기통신기술심의회령에 의해 설치된 우정성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는 정부기관, 대학, 통신사업자, 연구소, 제조업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기통신의 기술에 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우정대신에게 건의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되었다. TTC 정관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표준 작성, 둘째,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셋째,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표준의 보급 및 부대사업 등을 행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회원은 전기통신사업자, 제조업자 등 150여개사에 이르며, 이중에는 외국회사도 20여개 포함되어 있다. TTC는 ITU-T나 ISO표준에 대응하는 표준을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1993년 6월 현재 TTC표준은 178개이다.

TTC는 총회, 이사회, 간사회, 사무국, 조정위원회, 기술소위원회, 작업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공업소유권 취급지침 등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2. TTC의 지적재산권 정책 수립 배경 및 특징

TTC에서는 1988년 정지화면 TV 전화의 통신 방식을 표준화할 때 처음으로 특허문제를 취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블이 없었다. 이 케이스에 대하여 TTC는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한 한도내에서 권리자를 조회하여 협의한 결과, 로열티를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무상공개에 대한 간단한 문장을 각 권리자로부터 제출받았다. 이것을 전제로 당 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그후 TTC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의 처리지침등을 제정하기 위하여 TTC내에 「공업소유권 취급 기본지침 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과 얹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위원회가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989년 5월과 10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TTC는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과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의 운용 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1년 3월에는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과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의 운용 세칙」을 묶어 '공업소유권 등의 취급(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하는 제목의 영문과 일본어로 된 책자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에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문제시 되는 경우의 기본정책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前文에는 'TTC는 가능하면 TTC표준이 만인에게 무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여러가지 논의 끝에 결정된 타협의 결과라고 한다. TTC는 당초 '무상이 원칙이다'라는 표현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등이 있어서 결국 원칙은 유상, 즉 예외로 유상이 아니며, 무상이 '가능하면 바람직하다'는 기본정책을 「기본지침」의 前文에 명백히 하는 정도로 타협 하였던 것이다.

TTC는 TTC표준에 특정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소유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그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허락한다(무상공여)는 취지의 확인서(written confirmation)나 또는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밝힌 후 적절한 조건하에 비배타적으로 무차별적으로(on a non-exclusive basis and on appropriate terms and conditions) 사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을 때 표준화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표준화의 과정에서 표준화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지적재산권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분담하여 조사를 하며²⁾ 권리자에게 확

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³⁾ TTC는 표준화할 때 대상이 되는 기술을(출원중이라든지 출원공개 전에 비밀취급하고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TTC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표준안에 채택되는 경우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의뢰서(지침상의 명칭으로는 확인서)를 표준에 관계되는 특허권의 권리자 또는 출원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송부한다. 출원중, 출원공개전 어느 경우이든 표준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가능한 분명하게 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표준화로 인한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며, 다른 표준화 추진 방법을 고려해 볼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확인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TTC 표준화회의 소관 부문위원회에서 해당 표준안 결정전까지로 하며⁴⁾, 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의 운용세칙」에서는 확인서의 제출시기에 따른 처리절차와 권리소유자가 회원 혹은 비회원 경우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확인서에는 발명명칭, 출원년월일, 출원번호 등을 비롯한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및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는데 대한 대가 등의 조건을 기재하게 된다. 조건은 기본지침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유상으로 할 것인가(적절하고 비배타적인 조건제시) 하는 것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TTC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차별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기술은 표준안에서 제외시킨다.

<표 1>은 TTC 표준과 관련된 특허에 관련된 확약서 제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TTC 지적재산권 정책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많은 권리소유자가

무상공여의 조건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최근에는 유상공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제출되어진 몇몇의 확인서에는 특허사용료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전 및 복잡성의 증대에 따라 1개의 표준에 대해 여러개의 특허가 얹힌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다수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확인서를 받아들이는 경우 TTC는 향후 문제발생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문서를 보관하게 되며, 표준문서를 출판할 때 주기(patent notice)를 부기한다. 주기에는 먼저 표준의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붙이게 된다.

한편, TTC의 경우도 타표준화기구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적재산권 실시를 허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

2)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의 운용세칙」에 의하면, TTC 표준에 관계되는 공업소유권의 조사를 가능한한 해당 부문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표 1> TTC 표준과 관련된 특허에 관련된 확인서 제출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표준에 대하여 해당 권리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각각의 권리자들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는다.

4) TTC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벌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확인서 제출을 계울리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지상증계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표 1> TTC 표준과 관련된 특허에 관련된 확약서 제출 현황

TTC Standard	Standard No.	Written Confirmations
Still Video Communication over an Analog Telephone Network	JJ-40.10	4 Members(1)
Still Video Communication over an Analog Telephone Network(color)	JJ-40.10	3 Members(1)
Support of Data Terminal Equipment(DTE) with V-series Type Interfaces by an ISDN and Interface Specification	JT-V110	1 Member(1)
Digital Transmission System on Metallic Local Lines for Data Network	JJ-50.10	2 Members(1)
Digital Transmission System on Metallic Local Lines for ISDN Basic Rate Access	JT-G961	1 Member(1)
Video Coding for Audiovisual Services at Px 64kbit/s	JT-H261	11 Members(2) 22 Non-Members(2) (CCITT Patent Statement)
Standards related to B-ISDN	JT-I361,etc.	1 Non-Member(2) (CCITT Patent Statement)
Standards related to G3 Facsimile	JT-T4,etc.	2 Non-Members(2) (CCITT Patent Statement)
Telewriting Terminal Equipment	JT-T150	1 Member(2)
Coding of Speech at 16kbit/s Coding Excited Liner Prediction (LD-CELP)	JT-G728	2 Members(2) 3 Non-Members(2) (including 1 Company proposing specific condition)
Video Coding for Audiovisual Services at Px 64kbit/s	JT-H261	2 Members(2)
Confidentiality System for Audio-visual Services	JT-H233	1 Member(2)
Mobile Application Part(MAP) Signalling System of Digital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Inter-node Interface(DMNI) for PDC	JJ-70.10	1 Member(1)

* 주 1 : JT는 ITU-T 권고에 근거한 표준을 의미하며, JJ는 TTC 고유의 표준을 의미함.

** 주 2 : (1)은 무상공여 조건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는 합리적 보상의 조건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자료 출처 : GSC Meeting Document (94)-8 Study of IPR-related matters in the TTC, TTC

지상증계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3. TTC의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기본지침 (1989년 5월 18일 이사회결정)⁵⁾

(사) 전신전화기술위원회(이하 [TTC]라 한다)에서 제정한 TTC 표준은 공정,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회원의 총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TTC 표준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공업소유권 등(공업소유권 등이란 특히, 실용신안, 의장 등을 말하며 출원증인 것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이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의 의지, 혹은 총의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공정,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TTC는 TTC 표준의 보급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TTC 표준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관계되는 공업소유권 등이 만인에게 무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TC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공업소유권 등이 관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취급의 기본지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본 기본지침에서 정한 것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TTC 이사장의 자문기관인 「공업소유권 등의 취급기본지침 등 검토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A. 취급

TTC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 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권리 소유자가 다음의 (1) 또는 (2)를 선택하는 경우는 TTC 표준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권리 소유자는 해당 공업소유권 등에 대해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TTC 해당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무조건으로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2) 해당권리 소유자는 해당권리의 내용 및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하에 비례타적으로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다만, 해당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되는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소유하고 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그 자를 (1) 또는 (2)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TTC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 등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책임이 없고 또한 공업소유권 등에 관계되는 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절차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 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B-1 확인서의 제출

해당권리 소유자는 TTC 표준의 작성에 즈음하여 공업소유권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 (2) 또는 (3)의 확인서(서식은 부록에 규정)를 TTC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1) 「해당권리 소유자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 등의 대상

5) 본 절에서는 TTC의 지적재산권 정책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번역·수록한다. 본 지침의 운용상 취급요령은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기본지침의 운용세칙](1989년 10월 25일 이사회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지면판 계상 운용세칙의 전체 수록은 생략한다. 다만, 특징적인 내용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상증계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무조건으로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2) 「해당권리 소유자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 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권리의 내용 및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하에서 비례타적으로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3) 1항의 취급에서 (1) 또는 (2)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권리 소유자는 해당 공업소유권 등에 관하여 1항 (1) 또는 1항 (2)에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

확인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TTC 표준화회의 소관부문위원회에서 해당 TTC 표준안 결정전까지로 한다.

확인서에는 해당 공업소유권 등의 전명(출원번호/공개번호/공고번호/등록번호) 및 조건 등을 부기한다.

또한 공개전에 신고한 사항은 공개후에 다시 한번 신고를 행하며, 해당 권리가 불성립 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그 사항의 신고가 필요하다.

B-2 확인서의 보관 및 주기의 기재

TTC는 해당권리 소유자로부터 B-1항 (1),(2) 또는 (3)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때는 문서를 보관하고 또는 B-1항 (1) 또는 B-1항 (2)를 인정하는 확인서의 경우는 TTC 표준에 다음과 같은 주지의 주기를 기재한다.

* 주의 : 본 표준에는 공업소유권 등에 관해 특별한 기술은 하지 않았는데, 권리소유자는 「해당권리에 대

해 XXX의 권리는 YYYY가 보유하는 것인데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무조건으로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다만, 해당 TTC 표준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해당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되는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를 소유하고 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혹은 「적절한 조건으로 그 실시를 허락한다는... 취지」) 표명하고 있다. 등

B-3 확인서의 미제출에 관련된 책임

TTC는 해당권리 소유자가 2.1항의 확인서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록> '공업소유권등의 실시 권리에 관계되는 확인서에 대하여' : 생략⁶⁾

- 6) <부록>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 권리에 관계되는 확인서]는 공업소유권 등이 공개후인 경우와 공개전인 경우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며, 만약 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는 신속하게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되어 있다.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1. 확인서 제출연월일 2. 해당하는 표준화의 전명 또는 검토항목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또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4. 출원의 년월일 및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공개후인 경우는 출원년월일 및 출원번호만 기재) 5. 발명의 원칙(공개후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6.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공개후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7. 발명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등을 기재한 명세서 및 도면(공개후인 경우는 발명명칭만 기재, 대신 출원증인 권리에 포함되는 TTC표준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함) 8. 특허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실시 권리를 허락하는데 있어서 대가 등의 조건 등이다. 이 확인서는 권리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작성·제출하게 된다.

4. RCR(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에 대하여

RCR은 무선장비제조업자,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새로운 전파이용 시스템의 조사연구, 연구개발 및 보급계몽,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985년 2월 설립되었다. 그 후 1986년 1월부터는 우정대신의 인가를 얻어서 전파이용 시스템에 관한 표준(Voluntary Technical Standard)을 제정하고 있으며, 1988년 4월부터는 '전파법'의 개정('89.7.)에 따라 '전파유효이용촉진센터'로 지정받아 무선국의 개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 및 상담에 응하고 있다.

정관에 의한 주요임무를 살펴보면, 첫째, 전파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 둘째, 전파이용에 관한 컨설팅, 보급계몽 및 자료·정보 수집과 제공, 셋째, 전파이용 시스템에 관한 표준규격의 책정, 넷째, 전파이용 시스템의 개별 식별부호의 부여, 다섯째, 기타 부대사업 등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3년 10월 현재 회원은 169개사로 무선장비제조업자, 통신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기관, 단체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CR에는 원활한 표준화활동을 위하여 조사기획위원회를 비롯하여, 개발위원회, 규격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조사기획위원회는 조사연구 업무와 관련하여 전파의 이용에 관한 수요동향, 기술동향 등의 조사 및 RCR에서 연구개발해야 할 새로운 전파이용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기획한다. 개발위원회는 RCR의 연구개발 업무과 관련, 조사기획위원회에서 선정된 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규격위원회는 전파이용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표준으로 제정한다. 1993년 10월 현재 규격위원회에는 인증관련 분과위원회, 지적재산권 작업반

을 비롯한 총 7개의 소연구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5. RCR 지적재산권정책 수립 배경 및 특징

RCR에서는 1991년 4월에 표준화된 '디지털방식 자동화 전화 시스템'에서 특허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 4개사가 무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라이센스를 제공한다고 합의하였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표준화가 추진되었다. 이 표준화를 계기로 RCR에서는 「표준규격에 관한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일반적인 룰을 1991년 6월에 작성하였다. 그 때까지는 RCR에는 룰다운 룰이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디지털방식의 차량전화·휴대전화 시스템' 1건에 대한 룰만을 작성하였으나, 그것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종합·정리한 것이 현재의 지침이다.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기본원칙, 표준화절차 등에 있어 TTC와 비슷한 점이 많다.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TT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준규격의 보급을 고려해서 표준규격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련되는 필수의 공업소유권을 만인에게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前文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생겼을 때 표준화 대상이 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고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법, 주기를 기재하는 것, 확인서 보관, 책임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다.

한편, RCR의 지적재산권정책에는 TTC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 첫째로 필수공업소유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여기에서 필수공업소유권이란 해당공업소유권을 침해함이 없이는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장치, 기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이 기술적

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가 지적재산권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지적재산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RCR은 비필수공업소유권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에서는 타국에의 특허출원 상황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前文에서는 '표준규격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련되는 필수공업소유권을 만인에게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 및 해당표준규격을 채용하는 다른나라에서도 해당 필수공업소유권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침의 本文내 적용범위 및 적용지역에서는 무상허여의 경우 취급은 '일본내에서 해당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장치, 기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른나라에서 해당표준규격이 채용되는 경우의 필수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RCR은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의 운용지침」에서, 해당표준규격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련되는 필수의 공업소유권은 다른 어떠한 조건의 부가없이 기본지침의 규정에 의해서만 취급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허여한 자에 대한 배려를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운용지침은 3년간 잠정시행되는 것이며, 운용상황, 국제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정책 책정 상황 등의 감안하여 다시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6. RCR의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⁹⁾

(1991년 6월 28일 제 12회 규격위원회결정)

표준규격은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규격위원회의 위원총의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규격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필수의 공업소유권(공업소유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말하며,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필수의 공업소유권은 해당공업소유권을 침해함이 없이는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장치, 기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하동일)이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의 총의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7) 필수지적재산권 내지 필수공업소유권 개념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표준화기구는 현재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와 RCR 뿐이다.

8)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의 운용지침」에서는 [무상실시를 허여한 필수공업소유권자에 대해서 해당비필수공업소유권을 일본의 해당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당비필수공업소유권 실시의 허락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비필수공업소유권자는 해당 필수공업소유권자로부터 해당필수공업소유권 실시 허락을 무조건으로 받고 있는 것에 적절한 배려를 하여, 해당비필수공업소유권에 관련되는 실시허락에 대해서 적절한 조건(무상포함)하에 실시허락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9) 본 절에서는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을 번역·수록한다. 본 지침외에도 본 지침의 운용을 위한 세칙이 마련(1991년 6월 28일 제 12회 규격위원회결정)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운용세칙의 전체 수록은 생략한다. 다만, 특징적인 내용은 5절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규격위원회는 표준규격의 보급을 고려해서 표준규격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련되는 필수의 공업소유권을 만인이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 및 해당표준규격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필수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규격위원회는 표준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필수의 공업소유권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취급기본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취급

(1) 선택기준

규격위원회는 (1)의 표준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수의 공업소유권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필수의 공업소유권의 권리소유자(이하 「해당권리소유자」라 한다)가 다음의 ① 또는 ②가 제시하는 취급을 선택하는 경우에 표준규격의 대상으로 하며, ③이 제시하는 취급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① 해당권리소유자가 해당필수의 공업소유권에 대해서 해당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무조건으로 해당필수의 공업소유권 실시를 허락한다. 단, 해당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표준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되는 필수의 공업소유권의 권리를 소유하며, 그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 해당권리소유자가 그 자를 본 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② 해당권리소유자가 해당필수의 공업소유권 권리의 내용 및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해당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건하에 비례타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해당필수의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허락한다. 단, 해당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표준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되는 필수의 공업소유권의 권리를 소유하며, 그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 해당권리소유자가 그 자를 본 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③ 해당권리소유자가 상기 각호가 내세우는 사항을 취급하지 않는다.

(2) 공업소유권에 관련되는 분쟁

규격위원회는 표준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수의 공업소유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책임은 없으며, 또한, 공업소유권에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적용범위 및 적용지역

본 기본지침의 ①의 취급은 일본내에서 사용되는 해당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장치, 기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단, 다른 나라에서 해당표준규격이 채용되는 경우의 필수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문(前文)의 취지를 존중하여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B. 절차

표준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수 공업소유권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확인서의 제출

해당권리소유자는 표준규격의 작성에 대해서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또는 별표 제3호가 정하는 필수 공업소유권 실시의 권리에 관련되는 확인서(특허권 이외의 공업소유권에 관련되는 해당확인서 이면의 기재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기재에 준하여 기재할 것)를 규격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2) 확인서 제출의 기한

확인서 제출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규격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하며, 규격위원회의 해당표준 규격을 담당하는 분과회의 경우 해당표준규격안 결정전의 해당분과회가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B(1)에 대해 필수 공업소유권 가운데 출원공개 (국제공개 및 국내공표를 포함)하며, 이중 가장 신속하게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동일)전에 제출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출원공개후 다시 한 번 제출해야 하며, 해당필수의 공업소유권 가운데 권리가 불성립 또는 소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제출한다.

(3) 확인서의 보관 및 주기의 기재

규격위원회의 사무국은 해당권리소유자로부터 B(1)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을 때는 그 확인서를 보관하며, 또한 별표 제1호 또는 별표 제2호가 정하는 확인서를 접수했을 때는 해당표준규격에 다음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 주의 : 본 표준규격에는 본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필수의 공업소유권에 관해 특별한 기록은 행해지고 있지 않지만 해당필수의 공업소유권 권리소유자는 [본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인 XXX의 권리는 YYY가 보유하는 것이지만, 본 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별표 제1호 확인서의 경우)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며 무조건으로

(별표 제2호 확인서의 경우) 적절한 조건하에 비 배타적이고도 무조건으로

해당 XXX의 실시를 허락한다. 단, 본 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자가 본 표준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되는 필수의 공업소유권을 소유하며, 한편 그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 그 자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표명을 하고 있다.

(4) 확인서의 미제출에 관련되는 책임

규격위원회는 해당권리소유자가 B(1)의 확인서의 제출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별표 생략)¹⁰⁾ ~~TTA~~

참고문헌

1. 박기식, 이선화, "기술사유의 지적재산권과 기술공유의 표준화 전략", 월간정보통신시대, 1994.4. (주) 정보시대. pp. 123-128.
2. 박기식, 이선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주요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중심으로-", 제 4 회 ITU 교육 프로그램 강연 자료집, 1994.5. 17. pp. 93-107.
3. 박기식,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제 4회 전산망 기술 및 표준화심포지움 Proceeding, 1994.6.3. pp. 5-22.
4. 이선화, 정석호,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 TTA Journal 제 33호, 1994.8. pp. 66-76.
5. 名和小太郎, 技術基準對知的所有權, 中央公論社, 동경, 1990. pp. 7-27.
6. 石黒一憲, 情報通信知的財産權의 國際的 視點, 國際書院, 동경, 1990. pp. 145-182.
7. 電氣通信技術審議會, 平成 2年度 電氣通信技術審議會答申, 電氣通信技術審議會, 동경, 1992.3.

10) RCR의 경우는 '필수의 공업소유권 실시의 권리에 관련되는 확인서' 제출양식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RCR의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지침'의 (1)의 ①, (1)의 ②, (1)의 ③이 제시하는 조건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8. 電信電話技術委員會, 工業所有權等の取扱, 電信電話技術委員會, 韓國, 1991.3.
9. 電波システム開発センタ, 標準規格に係る工業所有權の取扱に関する基本指針, 電波システム開発センタ, 韓國, 1991.6.
10. Nicholson, Ron and Roger Miselb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med Publishing Co., 1993. pp. 4-143.
11. Mark Shurmer and Gary Lea,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Fundamental Dilemm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10th Annual Conference, Sydney, Australia 3-6 July 1994.
12. GSC Meeting Document (94)-8, Study of IPR-related matters in the TTC, TTC, 1994.

< 약어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BTA	Broadcasting Technology Association
CCITT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CR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 Council